

축산물 ([] 닭 [] 오리) 등급판정신청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즉시
------	-----	---------

신청인	①성명	②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
	③업소명	
	④주소 (전화번호:)	

도축장, 식육포장 처리업소	⑤업체명	⑥사업자등록번호
	⑦대표자	
	⑧소재지 (전화번호:)	

사육 농가	⑨성명	⑩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
	⑪농장명	⑫농장식별번호
	⑬주소 (전화번호: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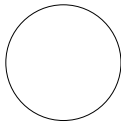
⑭접수번호	⑮이력번호	⑯품목(부위)	⑰품종	⑱수량	⑲중량규격	⑳비고

「축산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㉑대리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축산물품질평가사 귀하

수수료	납부확인
「축산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	

유의사항

1. ① ~ ④란 및 ⑨ ~ ⑬란은 신청인이, ⑤ ~ ⑧란 및 ⑭ ~ ⑳란은 도축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각각 적습니다.
2. ⑨ ~ ⑪란 및 ⑬란은 가축을 실제 사육한 사람을 기재하며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는 "신청인과 같음"으로 적습니다.
3. ⑫란은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적습니다.
4. ⑭란은 도축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등급판정을 신청한 닭·오리 무더기(LOT)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.
5. ⑮란은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발급받은 이력번호를 적습니다.
6. ⑯란은 "닭도체", "부분육(부위명)", "오리도체"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7. ⑰란은 정확한 경우만 적습니다.
8. ⑱란은 "닭도체"와 "오리도체"의 경우만 적습니다.
9. ㉑란은 도축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